

영아종일제서비스 이용 계약서(서비스제공기관(대표자) - 이용자 - 아이돌보미)

(평택시가족센터)서비스제공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아이돌보미(이하 아이돌보미라 한다)를 통한 영아종일제서비스를 제공·이용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제공기관과 아이돌보미가 이용자에 대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및 제공을 위한 연계를 하고 아이돌보미가 이용자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3년()월(1)일부터 2023년()월()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 내용 미 변동 시 제공기관이용자아이돌보미의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이 자동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3조(돌봄대상) 아이돌보미는 이용자가 신청한 돌봄 대상아동을 돌본다.

제4조(돌봄시간) 아이돌보미는 계약기간 동안에 (이용자가정) 장소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 C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준수사항 14호를 적용한다.

제5조(이용료) 아이돌보미는 이용자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이용대가로 제공기관에 이용료 지불한다. 제공기관은 매월 아이돌보미의 활동 수당을 지급한다.

- 서비스 연계 후 아이돌보미의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결근하거나 이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여름휴가, 경조사, 병가 등) 아이돌보미가 휴무하게 되는 경우 계약 당사자들에게 **최소 3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 (결근 기간의 이용료는 지불하지 않는다.)
- 당일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에는 아래와 같이 이용자가 부담하고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한다.

취소 시각	서비스 시작 기준 24시간 전 부터 1시간 전	서비스 시작 1시간 전 시각을 지난 후 서비스 시작 전	서비스시작 시간 이후(취소불가)
취소 수수료	당일 1건 당 11,080원 부과	11,080원×기 연계시간×0.5 (단, 최소부과액은 11,080원)	11,080원×기 연계시간 (이용요금 100%, 단, 최소부과액은 11,080원)
비 고	* 단, 이용자가 월 최소 이용시간인 80시간미만으로 이용할 경우 미달한 시간에 대한 이용요금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한다. 예) 영아종일제 월 75시간 이용 시 : 80시간-75시간=5시간×11,080원 = 55,400원 추가 부담		

* 단, 월 서비스 시작일 3일 이전에 이용자가 월 계약 중단 등 변동사실을 미리 고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료는 지불 하지 않아도 됨

- 정부지원 시간 외에 추가되는 돌봄 비용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6조(이용료 지급방법)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요금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매월 선 지불한다.

제7조(준수사항)

- 아이돌보미는 서비스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돌봄 활동시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서비스 이용자와 아이에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야 한다.
 - 반드시 활동시간 전에 도착하여야 한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늦을 경우 해당 가정 및 제공기관에 사전 연락 하여 양해를 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 활동 종료 시 이용자에게 아이를 안전하게 인계한 후 활동을 종료하여야 한다.
 - 활동 중 절대로 음주나 흡연 및 아이에게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활동 중 이용자의 승인이 없거나 대체인력이 도착하기 전에 아이를 혼자 두고 무단이탈을 하여서는 절대 아니 된다.
 - 이용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을 아이의 돌봄 장소로 불러들일 수 없으며 아이를 지정된 돌봄 장소로부터 이격 시켜서는 아니 된다.

8. 연 1회 정기건강검진을 하여야 하며 자신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전염성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고, 전염성 감염병 발생 시에는 이용자 및 제공기관에 즉시 알린 후 활동을 중지하여야 한다.

▶ 이용자는 아이돌보미의 활동 중단 시, 대체 돌보미 연계 또는 대체 돌보미가 없을 경우 대체 돌보미 연계까지 일시적으로 다른 돌봄 형태를 활용하거나,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음에 합의한다.

9. 연 1회 아이의 안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서비스 이용 전 아이의 건강상태 및 주의사항 등을 서면 또는 구두, 문자메시지, 메일 등으로 아이돌보미에게 알려야 한다.
- 이용자는 아이돌보미에게 아이와 관련된 업무 외의 일을 요구할 수 없다. 아이돌보미의 활동범위는 돌봄과 관련된 행위로만 제한하여야 한다.
- 아이돌보미에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여야 한다.
- 서비스 이용 종료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늦을 경우 아이돌보미에게 사전 연락 하여 양해를 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이용자는 서비스 종료 10일 전에 계약 연장 여부를 제공기관과 아이돌보미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책임의 한계)

- 제공기관은 아이돌보미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중 과실 및 부주의로 아이와 제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 이용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제공기관이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범위 내에서 해결한다. 그 이외의 경우는 이용자와 아이돌보미가 합의하여 해결한다.

제9조(계약해지)

- 제공기관, 이용자, 아이돌보미는 상기 항목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이행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공기관, 이용자, 아이돌보미는 본 계약에 대한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최소 10일전 까지 계약 당사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체결) 상기 사항을 확인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제공기관, 이용자, 아이돌보미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1조(계약연장) 제공기관, 이용자, 아이돌보미는 변동 사항이 없을 경우에만 월 단위의 동 계약을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한다.

2023 년 월 일

계약자 : 서비스제공기관 평택시가족센터 (서명))
 이용자성명 (서명))
 아이돌보미성명 (서명))

